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10 발의연월일: 2020. 10. 22.

발 의 자: 안호영·양정숙·송옥주

양이원영·노웅래·윤미향

이용빈 · 임종성 · 김승원

김수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지 않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제조·수입·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 를 위반할 시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해서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학물질을 사용·판매한 자 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.

한편,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, 중 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등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 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.

그런데 환경부장관이 등록·신고 업무를 수행할 때 수입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통관기록 등의자료가 필요하나, 현행법에 환경부 외의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

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입 화학물질의 등록・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.

이에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・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수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 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 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3조, 제43조의2, 제50조 및 제51조).

법률 제 호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13조제1항 중 "이하 이 조에서 "미등록등화학물질"이라 한다"를 "이하 "미등록등화학물질"이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조 또는 수입"을 "제조·수입·사용 또는 판매"로 한다.

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2(자료제공의 요청)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수리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 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50조제3호 중 "자"를 "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한 자" 로 한다.

제51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등화학 물질을 사용·판매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·판매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등록등화학물 질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	제13조(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
대한 조치 등) ① 누구든지 제	대한 조치 등) ①
10조제1항・제5항에 따른 등록	
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	
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	
당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	
니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을 받	
지 아니한 화학물질(<u>이하 이</u>	이하 "미등록
조에서 "미등록등화학물질"이	등화학물질"이라 한다
라 한다)을 제조・수입・사용	
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.	
② 환경부장관은 미등록등화학	②
물질을 <u>제조 또는 수입</u> 하는 자	<u>제조·수입·사용 또는</u>
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·수	판매
입·사용·판매의 중지, 회수	
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	
다.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43조의2(자료제공의 요청) 환경
	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
	질의 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
	신고수리 등을 하기 위하여 필

제5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제38조제 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 령을 위반한 <u>자</u>

3의2. ~ 4. (생 략)

제5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제38 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

	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
	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
	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
	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
	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
	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
	요청에 따라야 한다.
제	50조(벌칙)
	,
	1.•2. (현행과 같음)
	3
	<u>자로서 미등록등</u>
	화학물질을 제조・수입한 자
	3의2. ~ 4. (현행과 같음)
제	51조(벌칙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-----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
1. • 2. (생략) <u><신 설></u>

3. ~ 5. (생략)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
2의2.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 등화학물질을 사용 • 판매한 <u>자</u>

3. ~ 5. (현행과 같음)